

제 호

동물용의약품 · 동물용의약외품 제조관리자등 교육실시기관 지정서

기관의 명칭 :

소재지 :

대표자 :

교육실시기관 종류 :

「약사법」 제37조의2·제37조의4 및 「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」 제13조의5제4항·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용의약품·동물용의약외품 제조관리자등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농림축산검역본부장
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

직인

변경 및 처분사항 등	
연월일	내용